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7. 10 선고 2018가단4587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

## 전 문

원고A

피고1. B

2. C

3. D

4. E

5. F

피고 1, 2, 3, 5의 소송대리인 E

변론 종결2019. 6. 19.

판결 선고2019. 7. 10.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F는 아산시 G 임야 33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7㎡에 설치된 조적벽 아스팔트 싱글 지붕 단층 건물을 철거하고, 위 부분 17㎡를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위 가.항 기재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0㎡를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 F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측량감정촉탁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 F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산시 G 임야 33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7㎡'에 설치된 조적벽 아스팔트 싱글 지붕 단층 건물을 철거하고, 이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위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0㎡를 인도하라.

## 이 유

###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G 임야 3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H는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접한 아산시 I 지상에 흙벽돌 단층 건물(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4. 11. 25. 사망하였고(이하 H를 '망인'이라 한다),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D, E, F가 있다.

다. 피고 F는 1995년경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7㎡(이하 '㉠부분'이라 한다) 및 아산시 I 중 별지 도면 점선 부분 위치에 조적벽 아스팔트 싱글 지붕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라.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0㎡(이하 '㉡부분'이라 한다)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6호증, 을 3, 4호증,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아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F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부분을 침범하고 있고,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F는 이 사건 토지 중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이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F 외의 나머지 피고들도 이 사건 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도 ㉠부분 지상 건물 철거 및 이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망인 소유의 기존 건물은 철거되고 피고 F가 기존 건물과 동일성이 없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피고 F의 단독 소유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B 외의 나머지 피고들도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도 ㉠부분의 인도를 구하나, 나머지 피고들이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 3. 피고 F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F는,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1호증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소유하다가 1994. 11.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5. 5. 24.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6. 4. 17. 설정등기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실시되어 1999. 7. 29.자 낙찰을 원인으로 1999. 8. 20.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99. 8.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9. 8.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건물은 1995년경 피고 F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로서 위 임의경매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지 않았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 F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4. 결론

원고의 피고 B, F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김수영**

별지